

2 총회임원회 보고

제108회기 총회임원회 사업 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총회장 오정호
서 기 김한욱

1. 조직

1) 임 원

- 총 회 장: 오정호
- 서 기: 김한욱
- 회록서기: 전승덕
- 회 계: 김화중
- 부 총 회 장: 김종혁 김영구
- 부 서 기: 임병재
- 부회록서기: 김종철
- 부 회 계: 이민호

2. 회의

1) 임원회

(1) 제1차 임원회

☞ 일 시: 2023. 10. 10.(화) 15:00

☞ 장 소: 총신대학교 양지캠퍼스

☞ 결의사항

- ① 총회본부 업무공간 개편 건은 서기, 회계, 총무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 ② 총회수첩 전자수첩 제작 건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다.
- ③ 제108회기 총회 주요 일정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다.
 - 가. 2024년 총회 신년하례회: 2024.1.4.(목) 오전11시, 총회회관
 - 나. 제61회 목사장로기도회: 2024.5.6.(월)~5.8(수), 사랑의교회당
 - 다. 제109회 총회: 2024.9.23.(월)~27(금), 장소는 목사부총회장에게 맡겨 선정하도록 하다.
 - 라. 신규임원 친목회: 2023.10.31(화) 오후 5시, 장소는 총무에게 맡겨 추진하기로 하다.
 - 마. 임원수련회: 2023.11.27.(월)~30(목)
 - 바. 통합 교단 임원초청: 2023.11.17(금)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양지)에서 총무에게 맡겨 일정 및 장소를 추진하도록 하다.
- ④ 총무 사택 전세임대 관련 건은 유지재단에 맡겨 처리하도록 가결하다.

(2) 제2차 임원회

☞ 일 시: 2023. 10. 13.(금) 14:00

☞ 장 소: 총회세계선교회 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제108회 총회 회의록을 전승덕 목사가 보고하니 자구 수정하여 채택하기로 가결하다.



- ② 제108회 총회 결의에 따른 위원 선정은 전례대로 총회장, 서기에게 맡겨 10월 24일에 기독교신문에 발표하기로 가결하다.
- ③ 경안노회 영덕교회 관련 사안은 장로부총회장, 회록서기, 부서기에게 맡겨 중재기로 가결하다.
- ④ 총회임원회 수입사항은 총회장, 서기에게 맡겨 처리안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서 다루기로 하다.
- ⑤ 각 상비부 임원, 실행위원 보고는 총회장, 서기에게 맡겨 조정하기로 하다.
- ⑥ 정치부에서 보고한 경서노회 헌의안 제출 관련하여 노회 결의 없이 노회직인과 노회장, 서기의 도장을 불법 날인하여 총회에 헌의안을 제출한 것은 해총회 행위로 엄중한 사건으로 판단하고 해 노회에서 명백하게 조사처리하여 11월 30일까지 보고토록 가결하다.
- ⑦ 일본그리스도개혁신학교 총회(10.17-19)에 총회장 참석이 어려워 임종구 목사를 특사로 파송하기로 하다.
- ⑧ 총회 공문서 수·발송 검토가 필요 시 서기, 회록서기에게 맡겨 검토하도록 가결하다.

(3) 제3차 임원회

☞ 일 시: 2023. 10. 27.(금) 10:30

☞ 장 소: 남한산성 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제108회 총회 임원회 수입사항은 아래와 같이 가결하다
 - 가. 미주중부노회복구 관련 건은 조건이 충족되어 청원 될 시 다루기로 가결하다.
 - 나. 제주선교센터 관련 결의에 따른 처리 방안을 세우기 위하여 부회록서기, 부회계에게 맡겨 실사하고 현황을 파악하여 보고토록 가결하다.
 - 다. 교육부가 청원한 장로 및 권사 직분자 교육 시행에 대한 일원화 청원에 대하여 부서기에게 맡겨 관련 내용을 파악하여 보고토록 가결하다.
 - 라. 미주동부노회 인준 신학교와 관련하여 소위원회로 이첩하기로 가결하다.
 - 마. 구제부 비상기금 5억 조성 현의는 재정부로 이첩하기로 가결하다.
 - 바. 성석교회 공동의회 참관 지도는 목사부총회장, 회록서기, 회계에게 맡기기로 가결하다.
 - 사. 총회연기금가입자회를 정식기구로 설치에 대하여 회계, 부회계에게 맡겨 내용을 파악하여 보고토록 가결하다.
 - 아. 그 외 호주노회 가입청원,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TFT관련, 생명존중관련, 충남노회, 교육관련부서 및 기관 업무조정, 유사 부서 및 기관 조정 관련, 언론대책위원회 신설관련, 총신대학교 6인 위원 구성관련, 대전노회 질의(현의182,183) 건은 위원회를 구성하여 발표됨을 확인하다.
 - 자.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총회 성명서 발표 및 국회 청원 현의와 관련하여 총회장 성명서가 발표됨을 확인하다.
- ② 목포제일노회 성민교회 김기철 씨, 영남노회 서머나교회 최주철 씨 외 1명이 청원한 총회 재판국 판결에 따른 이행 지시 요청 건은 서류적 내용과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류하기로 하다.
- ③ 충남노회 양중보 전도사 이명 청원은 허락하고 대표자 윤해근 목사가 청원한 노회 신설 청원(53개 교회/26개 당회)은 충남노회신설노회소위원회로 이첩하기로 가결하다.
- ④ 동한서노회에서 청원한 타 노회 불법가입으로 인한 행정보류 청원과 새한서노회에서 청원한 행복한교회 총회 전산 등록 청원 건은 서기에게 맡겨 행복한교회(박현철 목사 시무)가 어느 노회로 소속되길 원하는지 확인하여 원하는 측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⑤ 동전주노회에서 질의한 원로 목사에 대한 질의는 헌법대로(총회 헌법정치 제4장 4조 4항) 답

변하기로 가결하다.

- ⑥ 성남노회에서 제출한 부정한 금권거래에 참여한 불법조사 진정과 이이복 장로 장로부총회장 후보등록금 반환 청원에 대하여 관련 사안에 대하여 조사하기로 가결하다.
- ⑦ 제명출교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2023카합21328)은 사회소송대응매뉴얼에 따라 당사자(경기중부노회)에 위임된 것을 추인하다.
- ⑧ 총회는급재단에서 청원한 이사 추천은 총회장에게 위임하여 추천토록 가결하다.
- ⑨ 구제부에서 특별재정 5억 청원 및 진행 요청 건은 재정부에 이첩하기로 가결하다.
- ⑩ 전국목사장로기도회는 2024년 5월 20일(월) ~ 22일(수)로 일정 변경하기로 하다.
- ⑪ “교회여 일어나라 총회 섬김이대회”를 2023년 11월 6일(월), 새로남교회에서 총회 산하 기관장, 상비부 임원, 상설/특별위원, 노회장, 총회실행위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목양아카데미 사업의 일환이기에 해당 예산에서 진행하기로 가결하다.
- ⑫ 총무 급여 및 활동비는 회계부에서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4) 제4차 임원회

☞ 일 시: 2023. 11. 6.(월) 17:00

☞ 장 소: 새로남교회당

☞ 결의사항

- ① 성남노회에서 제출한 부정한 금권거래에 참여한 불법조사 진정에 따른 관련자(성남노회 노회장·서기, 이이복 장로, 제107회기 선거관리위원회 심의분과장)들을 출석케 하여 사실 확인과 소명을 청취하다.

(5) 제5차 임원회

☞ 일 시: 2023. 11. 23.(목) 11:40

☞ 장 소: 영광대교회당

☞ 결의사항

- ① 황서노회에서 질의한 원로목사 관련 헌법해석 질의 건은 헌법과 총회 결의에 따라 a.동사목사로 부임한 경우 동사목사 기간이 포함된다. b.부목사로 사역하다가 다른 교회에 갔다가 다시 담임목사로 부임한 경우 이전 부목사기간이 포함되지 않는다. c.전도사(강도사) 때부터 개척한 경우 기간에 산정되지 않는다. d.‘시무한목사’에 시무목사, 위임목사 모두 포함된다. 로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 ② 유지재단 이사 및 감사 추천은 총회장에게 일임하여 추천하기로 가결하다.
- ③ 영덕교회 김재성 장로가 영덕교회 조종배 목사의 대표자 삭제 확인서 발급 요청은 소위원회에 맡겨 처리토록 가결하다.
- ④ 부정한 금권거래 관련 처리에 있어 제107회기 총회선거관리위원회 임원이 제출한 경과 및 위원회 결의 보고서는 참고하기로 하고, 주흥동 장로를 재소환하기로 가결하다.
- ⑤ 총무 사택 관련하여 목적기금 중 일반적립기금에서 경상으로 16억 차용하여 재정부에서 처리토록 하고 109회 총회에서 추인받기로 가결하다.
- ⑥ 회기 마감 후 구제 사항이 필요시에는 구제부가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여 재정부로 하여 처리토록 가결하다.



(6) 제6차 임원회

☞ 일 시: 2023. 12. 7.(목) 15:00

☞ 장 소: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부정한 금권거래 관련 조사를 위해 출석토록한 주흥동 장로가 출석 대신 서면으로 제출하니 서류 내용을 확인하고, 현재 동일 사안으로 감사부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에 감사부 보고 후 처리방안에 대해 논의기로 하다.
- ② 목포제일노회 성민교회 김기철 씨와 영남노회 서머나교회 최주철 씨 외 1명이 제출한 제108회 총회재판 판결 이행지시 요청은 노회로 이행지시 공문을 발송기로 가결하다.
- ③ 경서노회에서 총회 지시사항(불법 헌의안 관련) 이행 사항(이원호 목사 - 총회총대/노회공직/대외활동 5년 정지, 서기 손대식 목사, 회록서기 박희수 목사, 부회록서기 김운선 목사 - 총회총대/노회공직 3년 정지) 보고는 받기로 하다.
- ④ 행복한교회(박현철 목사) 소속은 제출된 교회 요청서대로 새한서노회 소속으로 처리기로 가결하다.
- ⑤ 제주선교센터건립 관련 소위원회가 실사 후 현황 검토 사항을 보고하니 목사부총회장, 부회록서기, 부회계, 총무에게 맡겨 '제주선교 100주년기념교회'로 변경하여 건축 진행토록 가결하다.
- ⑥ 광주반석교회 박병재 목사 총회판결 조속 시행 요청과 광주전남노회 전남노회 신설노회 분립결의 이행 촉구와 전남노회 총회 조직보고 및 전산처리와 광서노회, 서광주노회, 전남노회, 광주전남노회 교회 행정처리 관련사항 보고를 병합하여 다루기로하다. 현재 4개 노회는 제108회 총회에서 분립 또는 신설 하였으나 총회보고서에 노회별 교회명단이 없어 행정처리를 할 수 없기에 서기, 부서기에게 맡겨 각 노회 명단을 받아 차기 회의에 보고토록 가결하다.
- ⑦ 기독교신문사에서 요청한 전국남전도회연합회 '남전뉴스' 발행 취소 지시 요청은 전국남전도회연합회는 총회 전도부 산하 속회이기에 기관지가 중첩되면 안 되기에 총무에게 맡겨 지도토록 가결하다.
- ⑧ 고시부에서 요청한 강도사고시 진행비 추경 건과 학생지도부에서 요청한 SCE간사 급여 추경 요청 건과 총회교회자립개발원에서 요청한 재정청원 건과 남부산남노회에서 요청한 아이티오 나빌기독교학교 재정 후원 청원 건과 통일목회개발원에서 요청한 사업비 추경 건과 총회헌법자구수정위원회에서 요청한 사업비 추경 건은 재정부로 이첩하기로 가결하다.
- ⑨ 성석교회 편재영 목사 측에서 총회를 상대로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합21551 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건은 성석교회 관련 소위원회에 맡겨 사건위임하여 대응토록 가결하다.

(7) 제7차 임원회

☞ 일 시: 2023. 12. 21.(목) 13:30

☞ 장 소: 새로남교회당

☞ 결의사항

- ① 감사부에서 제출한 보고서(107회기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일천만원 사건 관련)는 구체적인 위법사항과 법적근거가 기술되어있지 않기에 보완하여 제출토록 가결하다.
- ② 남평양노회에서 제출한 울릉양문교회 교회등록 요청 건은 좀 더 살펴보기로 하다.
- ③ 서울북노회에서 제출한 사전선거운동 위법성 사실 확인 요청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④ 경기중부노회에서 권징조례와 타교단 이증 가입자 등에 대한 시벌 해석 요청은 「①노회의 판결은 상회의 결정 전까지 시벌의 효력이 유지(총회헌법 권징조례 제100조)되며, 제명 출교(면

- 직)된자는 위임목사의 직위도 즉시 자동해제 된다. 하지만 제명출교를 당했다 할지라도, 상소할 수 있는 권리까지 박탈당한 것은 아니다(시벌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 총회헌법 권징조례 제 94조 ~ 제101조에 따라 상소할 수 있음) ②노회소속 목사는 타교단(타노회) 소속이 불가합니다(총회헌법 정치 제10장 제6조, 총회헌법 권징조례 제114조, 제79회, 제80회 총회결의, 정문 제187문, 제280문) ③ 본 총회산하의 목사가 타교단에 청빙 받아 본 총회에 소속된 노회로 교회가 가입할 때는 이전 탈퇴한 노회와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다」라고 답변키로 가결하다.
- ⑤ 전남노회(조직28교회/미조직38교회), 광주전남노회(조직25교회/미조직22교회), 광서노회(조직21교회/미조직20교회), 서광주노회(조직25교회/미조직24교회) 소속 교회명단을 서기가 보고 하니 유인물대로 전산처리키로 하고, 지산교회에 관하여는 행정정지키로 가결하다.
- ⑥ 성석교회 소위원회 진행사항을 위원장 전승덕 목사가 보고하니, 제108회 총회 결의에 따라 소위원회가 조정하는 것에 대하여 편재영 목사 측이 사회소송으로 불응하였기에 '결의에 불응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석교회의 모든 권한을 상실한다'는 총회결의에 따라 편재영 측의 모든 권한이 상실되기에 서경노회 임창일 목사로 전산처리키로 가결하다.
- ⑦ 서비스 용역(여행사, 기획사)·구매(입찰포함) 업무 처리에 대한 시행세칙 '2항 4)입찰 평가 (6) 특정의 한 업체가 동일한 상비부 행사에 대해 연속으로 선정 될 수 없다.'에 대하여 직전 회기에 입찰된 업체는 금번 회기에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음을 확인하다.
- ⑧ 임원회 수련회는 서기, 총무에게 진행토록 하다.
- ⑨ 총회직원급여 인상 건은 물가상승률(8월말기준-3.4%)을 반영하여 재정부에서 반영한 예산 내에서 인상키로 하고 총무에게 맡겨 처리하도록 하다.

(8) 제8차 임원회

☞ 일 시: 2024. 1. 4.(목) 14:00

☞ 장 소: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고흥보성노회에서 질의한 미혼인 부목사가 담임목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는 a.제102회 총회결의(미혼 안수 가함) b.제88회 총회결의(부목사는 동일교회 담임목사로 청빙 받을 수 없음)에 따라 답변키로 가결하다.
- ② 수경노회에서 질의한 은퇴목사로 구성된 은퇴목사회를 노회 상비부로 둘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는 총회헌법 정치 제10장 제3조에 따라 노회 상비부로는 할 수 없음으로 답변키로 가결하다.
- ③ 중앙노회에서 요청한 해린교회(이바울 목사)의 총회 전산 등록 요청은 위법사항관련조사처리위원회와 관련된 건이므로 위원회로 보내어 조사 후 보고토록 가결하다.
- ④ 성석교회 편재영 목사 측에서 총회를 상대로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99229 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 건은 성석교회 관련 소위원회에 맡겨 사건 위임하여 대응토록 가결하다.
- ⑤ 대구서현교회에서 보고한 107회 총회 판결 무효 확인(2023가합48290) 소송이 승소 판결됨을 확인하고, 해당 건을 박혜근 목사가 상소한 것은 1심과 동일하게 대구노회에 맡겨 대구서현교회가 사건 위임하여 소송 진행토록 가결하다.
- ⑥ 교회여일어나라위원회에서 보고한 일정은 보고대로 받고, 목사장로기도회에 대하여는 참고하여 임원회가 운영키로 가결하다.
- ⑦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TFT에서 사업비 추경 건과 노회록검사부에서 요청한 사업비 추경 건과 전국주일학교연합회 지원금 추경 건은 재정부로 이첩하기로 가결하다.
- ⑧ 총회본부 인사위원장 박용규 목사가 2024년도 직원 승진 및 특별승급 안을 보고하니 보고대



로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9) 제9차 임원회

☞ 일 시: 2024. 1. 18.(목) 14:00

☞ 장 소: 새로남교회당

☞ 결의사항

- ① 경북노회에서 질의한 지교회에 목사를 청빙 할 때에 공동의회에서 투표방법에 대한 질의는 ‘헌법 정치 제15장 제2조에 따라 시행하되 단, 그 회에서 투표방법을 결정하여 할 수 있다’라고 답변키로 가결하다.
- ② 경기중부노회에서 요청한 2023카합21328(제명출교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을 위한 소송 위임 요청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 ③ 영남노회에서 질의한 경상노회 분립 중 시별한 치리에 대한 질의는 양 측의 합의서 및 결의사항 통지 및 총회 결의 정신에 의거 ‘경상노회 치리자에 대한 처리’, ‘이상렬 씨 원로목사면직 건’, ‘경상노회 제199회 정기회에 실린 영남노회 시별자’에 대하여 원인무효 처리를 경상노회와 영남노회에 지시토록 가결하다.
- ④ 충남노회 폐지 후속처리와 관련하여 충신대학교에서 졸업예정자(남요셉 전도사) 인준 요청 건은 이상 없음으로 답변키로 하고, 충남노회신설소위원회 보고에 대해서는 위원회로 하여금 제 107회 총회, 제108회 총회 결의에 맞게 처리토록 가결하다.
- ⑤ 영덕교회 관련 소위원회 보고에 대해서 영덕교회(이성화 장로)가 대표자 증명서와 소속증명서류를 발급 요청한 것은 연말정산 서류를 요청한 것이기에 소속증명서만 발급해주기로 하고, 영덕교회(이성화 장로)가 대표자가 공식일 경우 위임해제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질의는 헌법 정치 제9장 제3조, 제10장 6조에 따라 위임 목사 해제는 노회에서 해제 되어야 해제되고, 현재 경안노회가 영덕교회를 행정보류한 상태로 공란인 것으로 답변키로 가결하다.
- ⑥ 감사부에서 제출한 제107회기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일천만원 뇌물사건 관련 감사 추가 보고서는 보고대로 받기로 하고, 처리 방안은 차기 임원회에서 다루기로 가결하다.
- ⑦ 재정부에서 질의한 아이티오나벨 기독교회 관련하여 현의가 아닌 추가 재정청원으로 접수된 건을 처리되는지에 대하여 처리 할 수 있음으로 답변키로 가결하다.
- ⑧ 제108회기 임원(부부동반)수련회는 외부 후원을 받지 않고, 책정된 임원수련회 예산에서 처리키로 가결하다.

(10) 제10차 임원회

☞ 일 시: 2024. 2. 15.(목) 14:00

☞ 장 소: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가칭 충남제일노회설립위원회명으로 윤해근 목사가 제출한 서류는 충남신설소위원회로 이첩하여 검토하여 법적으로 이상이 없어 신설이 요건이 될 시 보고토록 가결하다.
- ② 대전중앙노회에서 요청한 태안읍교회(임병극 목사)를 이명, 이적 요청 건은 제107회 총회 결의에 따라 허락키로 가결하다.
- ③ 유지재단 이사 임기 만료에 따른 추천 요청 건은 총회장에게 일임하여 추천키로 가결하다.
- ④ 충신대학교에서 요청한 개교회가 학생에게 직접 전달하는 장학금을 충신대학교를 통하여 학생에게 후원토록 하는 ‘지정장학금 안내’는 노회로 안내키로 가결하다.

- ⑤ 위법사항관련조사처리위원회에서 요청한 김낙주 목사, 이상철 장로 시무, 소속 이력자료 열람은 총회수임사항이므로 해 위원회에서만 열람토록 가결하다.
- ⑥ 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준비위원회에서 교단분담금 1천만원 요청 건은 허락기로 가결하다.
- ⑦ CTS기독교TV 부활절 퍼레이드 관련 요청 건은 ①후원은 전례대로 5천만원 지급하고 ②총회 산하 노회 및 기관에 행사 홍보/참가 요청은 허락기로 가결하다.
- ⑧ 전국목사장로기도회 준비 건은 ①강사는 총회장에게 일임하여 선정기로 하고 ②서기, 회록서기에게 실무 진행사항을 맡겨 준비하고 ③세례교인헌금 성실납부교회 시상 및 총회장 포상을 총회장, 목사부총회장, 장로부총회장, 서기에게 맡겨 선정토록 가결하다.
- ⑨ 은급재단 연기금 운영 컨설팅 건은 연기금 운영 컨설팅을 10년 전에 받았기에,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은급재단에서 연기금 운영 컨설팅을 받도록 지시하기로 가결하다.
- ⑩ 영덕교회 관련 소위원회가 보고하니 영덕교회는 경안노회에서 행정 보류하므로 소속이 없는 교회가 되었고, 중직자들의 탄원서가 있으므로 교회 정상화를 위하여 타노회(지역, 무지역)로 이적기로 하고, 소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 ⑪ 지산교회 관련하여 전남노회에서 제출한 광주지산교회 전남노회 소속 요청과 배호진 목사가 제출한 위임목사 시무 사임서와 광주지산교회 서기 안연준 장로 외 3인이 제출한 질의서와 광주지산교회 비상대책위원장 임동천 장로가 제출한 정상화를 위한 청원 건은 지산교회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목사부총회장, 서기, 회록서기, 부회계에게 맡겨 처리토록 가결하다.
- ⑫ 감사부에서 제출한 제107회기 선관위 뇌물사건 감사 결과 최종 보고는 ①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보고대로 받고, 기독교신문에 감사결과를 지면으로 공개하기로 하다. ②감사부 보고에 근거하여 주흥동 장로에 대하여 해 노회가 해당회로 하여금 징계토록 지시하고, 4월말까지 보고토록하기로 하다.
- ⑬ 규칙부에서 요청한 사업비 추경 건과 서울한동노회분립위원회에서 요청한 회의비 추경 건과 재개발특별위원회에서 요청한 사업비 추경 건과 노회간지역경제관련연구위원회에서 요청한 사업비 추경 건은 재정부로 이첩하기로 가결하다.
- ⑭ 여교역자연합회 수련회 지원은 관계적으로 매년 1천만원씩 지원하기로 가결하다.
- ⑮ 기자간담회에서 요청된 총회임원회 회의 브리핑은 서기, 총무에게 맡겨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브리핑하기로 가결하다.

(11) 제11차 임원회

☞ 일 시: 2024. 3. 14.(목) 11:00

☞ 장 소: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조진제 씨 외 3인이 총회를 상대로 소송한 대표자지위부존재 확인(서울남부지법 2022가합13) 건은 소위원회에서 임창일 목사에게 소송 위임하여 진행됨을 보고하니 추진하기로 가결하다.
- ② 목포제일노회 노회장 문미식 목사가 총회를 상대로 소송한 총회판결효력정지가처분(서울중앙지법 2024카합20219) 건은 재판 당사자 김기철 목사에게 대응하도록 하고 서기, 총무에게 맡겨 노회를 지도 하도록 가결하다(고소 취하함).
- ③ 중서울노회에서 질의한 이혼자에 대한 제108회 총회 결의가 장로 총대도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 건은 총대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됨으로 장로 총대를 공식으로 보아야한다. 그러나 총회 총대 선출은 노회에서 선정 권한이 있으므로 노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건덕을 위해 합당하게 판단하여 처리하도록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 ④ 서울북노회에서 요청한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서기 불법 조사처리 건은 임원회에서 다룰 수 없는 사안이므로 반려하기로 가결하다.
- ⑤ 재판국에서 질의한 제103회 총회 결의(시무목사 재판권)에 대하여 시무목사는 제103회 총회 결의에 근거하여 재판권이 없음으로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 ⑥ 영덕교회 관련 소위원회에서 보고하니 영덕교회는 민형사상 소송 중이므로 법적 판결 이후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 ⑦ 기후환경위기대응특별위원회에서 요청한 사업비 추경 건과 호주노회가입소위원회 사업비 추경 건은 재정부로 이첩하기로 가결하다.
- ⑧ 총회본부 인사위원장 박용규 목사가 총회본부 직원 전보 및 신규채용(김혜인, 전영현) 안을 보고하니 보고대로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12) 제12차 임원회

☞ 일 시: 2024. 3. 19.(화) 20:00

☞ 장 소: 일본 동경 도쿄돔호텔

☞ 결의사항

- ① 전국목사장로기도회 준비사항을 논의하다.
- ② 총회실행위원회 회의는 5월 8일(수) 오전 11시에 회집하기로 가결하다.

(13) 제13차 임원회

☞ 일 시: 2024. 3. 21.(목) 9:00

☞ 장 소: 일본 동경 도쿄돔호텔

☞ 결의사항

- ① 전국목사장로기도회 시간 배정안을 논의하다.
- ② 전국목사장로기도회 강사 선정안을 논의하다.

(14) 제14차 임원회

☞ 일 시: 2024. 4. 5.(금) 10:30

☞ 장 소: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총신대학교 박성규 총장이 총신대학교 UI 변경안 보고하니 받기로 하고 실행위원회에서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 ② 강중노회가 질의한 선거규정 제3장 제9조 6항에 대한 유권해석 질의는 선거관리위원회 고유 업무(총회규칙 제3장 제11조)이기에 선거관리위원회로 이첩하기로 가결하다.
- ③ 성남노회가 요청한 이이복 장로의 장로부총회장 후보등록금 반환 요청은 총회규칙 제3장 제8조에 의거 상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총회 선거규정 제4장 제20조(등록금관리) 2항에 근거하여 반환 될 수 없음을 확인하다.
- ④ 총신대학교에서 요청한 장로교육원 관련 협조 요청 건은 보고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⑤ 감사부에서 제출한 정기(중간) 감사 결과 청원 건은 기독교신문사 사장 태준호 장로 포상 청원은 총회장 포상위원회로 이첩하기로 하고, 배영국 장로 공직 정지 청원은 요청대로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 ⑥ 지산교회 관련 소위원회는 회록서기, 부회계, 김중운 목사(진주노회)로 구성하여 처리토록 하다.

- ⑦ 제주선교센터(제주선교100주년기념교회) 건립관련 소위원회 경과보고를 받기로 하다.
- ⑧ 노회지침관련연구위원회에서 요청한 회의비 추경과 총회연금가입자회에서 요청한 재정 청원 건은 재정부로 이첩하기로 가결하다.
- ⑨ 전국교회에서 활용할 수 있게 맞춤형 전도지, 교단 소개지와 교단소속 판넬을 제작하여 보급하기로 가결하다.
- ⑩ 전국목사장로기도회 관련하여 강사선정 및 포상 대상자를 논의하다.
- ⑪ 107회기 선거관리위원회의 방만한 예산사용에 대하여 감사부로 하여금 특별감사 지시하기로 가결하다.

(15) 제15차 임원회

☞ 일 시: 2024. 5. 8.(수) 14:00

☞ 장 소: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총회준비위원회 조직 건은 목사부총회장에게 맡겨 조직하도록 하고, 전국목사장로기도회 이후 조직하여 진행하기로 가결하다.
- ② 보수교단 합병 추진 건은 목사부총회장, 서기에게 맡겨 추진하도록 가결하다.
- ③ 한교총, 한기총 통합추진위원장을 총회장이 맡게 됨에 임원회도 총회장에게 위임하여 협력하기로 가결하다.
- ④ 타교단 가입 행정 처리 지침 건은 제104회 총회 결의대로 해교회 담임목사의 대표자권을 임시로 인정하여 교회 가입 처리 하도록 하고, 총회헌법 제15장 제13조 자격에 맞도록 3년 안에 강도사고시를 응시하여 자격을 갖추도록 하기로 가결하다. 단, 3년 내에 자격을 갖추지 않을 시 행정 처리를 취소한다.
- ⑤ 경평노회에서 질의한 헌법 정치 제21장 제1조 4항(공동의회 개회 성수 관련) 질의 건은 노회가 헌법대로 처리하도록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 ⑥ 경성남노회에서 요청한 범안교회 가입 건은 서기와 총무에게 맡겨 검토 후 차기회의에서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 ⑦ 충남노회 관련 행정처리는 ①윤덕홍 목사 경남노회로 이명 건은 허락하기로 하고 ②대전노회에서 질의한 타지역인 충남노회 소속교회와 회원을 이명, 이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와 대전중앙노회에서 요청한 이명, 이적 전산처리 요청은 제107회 총회 결의에 근거하여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 ⑧ 역사위원회에서 화목제일교회 한국기독교순교자사적지 지정 및 지정감사에배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 ⑨ 민찬기 목사가 총회를 상대로 소송한 선거관리위원회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2024카합20494) 건은 변론기일이 촉박하여 대응이 먼저 진행됨과 변호사 선임(수임료 5천만원, 승소 2천만원)사항을 보고하니 추인하고, 소송비용은 회계와 재정부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 ⑩ 서경노회에서 제출한 성석교회 고유번호증 대표자 정정 보고 건과 강서세무서 성석교회 대표자 정정 사실에 대한 확인 건은 현재 사회소송 중이므로 판결 시 까지 보류하기로 하고, 서기와 총무에게 맡겨 세무서에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 ⑪ 김낙주 목사가 제출한 헤린교회 별명부 해제 청원 건은 검토하여 차기 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다.
- ⑫ 농어촌부에서 요청한 회의비 추경과 전도부에서 요청한 사업비 추경 건과 구제부에서 요청한



회의비 추경 건과 감사부에서 요청한 회의비 추경 건과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에서 요청한 연구비 추경 건과 노회지침관련연구위원회에서 요청한 회의비 추경 건은 재정부로 이첩하기로 가결하다.

- ⑬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에서 요청한 회의비 추경 건은 1,000만원 허락하고 재정부로 이첩하기로 가결하다.
- ⑭ 여교역자회에서 요청한 건축기금 환수 중지 건은 해당 기금은 은퇴여교역자 생활지원을 위해 적절하여 안식관 건립을 위해 지원하였으나 불가하게 되었으므로, 남은 5억 지원은 중지하고 지원된 2억원 중 미환수금에 대해서도 계속 환수 조치하기로 가결하다.
- ⑮ CTV에서 요청한 전국목사장로기도회 방송 송출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16) 제16차 임원회

☞ 일 시: 2024. 5. 20.(월) 11:00

☞ 장 소: 사랑의교회당

☞ 결의사항

- ① 폐지된 충남노회 행정처리 관련하여 a.김드온 목사 함흥노회로 이명 건은 허락하기로 하고 b. 천안수정교회 주소 변경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 ② 칼빈대학교, 대신대학교, 광신대학교에서 제출한 재정지원 요청 건은 기존 총회지원금(2천만원)에 3천만원을 더하여 5천만원 지원하기로 하고, 재정부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가결하다.
- ③ 감사부 서기 홍순율 장로가 질의한 총대 폐당회 시 총대 자격에 대한 질의는 차기회의에서 다루기로 하다.
- ④ 경성남노회 범안교회 가입 요청 건은 총무가 삼산노회 측에 확인한바 이상 없음을 보고하니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 ⑤ 김낙주 목사가 제출한 헤린교회 별명부(행정정지) 해제 청원 건은 차기 회의에서 다루기로 가결하다.
- ⑥ 교육개발원 교재 개발비 추경 건은 회계단에서 예비비가 없음을 보고하니 보류하기로 가결하다.
- ⑦ 재정부에서 요청한 사회소송 대응비용을 선거관리위원회 예산에서 집행하는 것은 검토하여 차기 회의에서 다루기로 하다.
- ⑧ 노회록감사부에서 요청한 회의비 추경 건과 노회간지역경제관련연구위원회 사업비 추경 건은 재정부로 이첩하기로 가결하다.
- ⑨ 2024년 한국교회 교단별 목회자 축구대회 후원요청 건은 1000만원 후원하기로 가결하다.
- ⑩ 총회장상 시상은 세례교인 헌금을 24년간 성실 납부한 서울, 도시, 농어촌 교회 상위 20교회 (총 60교회)에 상패와 축하금 각 100만원 지급하기로 하고, 공로상 수상자(정성구, 김길성, 박용규, 이상민, 임종구, 고영규, 태준호)에게는 상패와 축하금 각 200만원 지급하기로 가결하다.

(17) 제17차 임원회

☞ 일 시: 2024. 6. 18.(화) 11:00

☞ 장 소: 흥천 대명비발디

☞ 결의사항

- ① 감사부장 한진희 목사 사임서는 반려하기로 하고, 감사부장 직을 위임하기로 가결하다.
- ② 호주노회가입소위원회 보고는 받기로 하고 가입 교회가 7개 이상 되어 신청할 때 안건으로 다루기로 가결하다.

- ③ 제주선교센터(제주선교100주년 기념교회)건립관련 소위원회 보고를 하니 김경태 목사를 소위원으로 추가하기로 하고, 신일교회 매각 절차 및 건축 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차기 임원회에서 다루기로 가결하다.
- ④ 남대구노회 및 서대구 노회가 제출한 지역노회 확인 요청 건은 분립 시 보고된 교회는 그 소속대로 인정하고, 필요시에는 당회가 결의를 하여 노회 허락으로 이적하도록 가결하다.
- ⑤ 미주서부노회 및 미주동부노회 교회 행정관련 청원 건은 목사부총회장, 서기, 총무에게 일임하여 실사하여 행정처리 하도록 가결하다.
- ⑥ 성석교회 관련 법원제출용 의견서 작성 요청 건은 15차 임원회 결의대로 보류하기로 가결하다.
- ⑦ 인천지방법원에서 큰샘교회(구 인천새소망교회) 관련 사실조회 요청(2023가합51792 당회장 및 담임목사 해임 청구) 건은 소속노회로 이첩하여 답변하도록 가결하다.
- ⑧ 경기중부노회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이오연 목사 관련 사실조회 요청 건은 현재 우리교단 회원이 아니므로 답변하지 않기로 가결하다.
- ⑨ 김낙주 목사가 청원한 해린교회 별명부(행정정지) 해제 청원 건은 서기에게 일임하여 내용을 확인 후 차기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 ⑩ 한국교회총연합 회비(119,200,000원) 납입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 ⑪ 총회역사위원회에서 청원한 역사관 설치비 청원 건과 고시부에서 청원한 고시부 추경 청원 건과 교정선교위원회에서 청원한 사업비 추경 건과 아시아지역노회신설소위원회에서 청원한 사업비 추경 건은 재정부로 이첩하기로 가결하다.
- ⑫ 전국목사장로기도회 모금된 현금(2490만원)은 목적대로 암투병하는 목회자들에게 지원하기로 하고 구제부에서 추천한 인원들에게 지급하도록 가결하다.

(18) 제18차 임원회

☞ 일 시: 2024. 7. 11.(목) 15:30

☞ 장 소: 무주 티롤호텔

☞ 결의사항

- ① 공천위원회는 2024년 9월 2일, 오전 11시 대전중앙교회에서 회집하기로 가결하다.
- ② 제주선교센터(제주선교100주년기념교회)소위원장 김종철 목사가 진행사항을 보고하니 보고는 받기로 하고, 총무를 위원으로 추가하기로 가결하다.
- ③ 지산교회소위원회 이민호 장로가 지산교회 양측 대표 장로를 만나 합의서를 작성함을 보고하니 보고를 받기로 가결하다.
- ④ 대전노회에서 제출한 천안장로교회 외 29교회 이적 및 김철수 목사 외 37명 이명 건과 평양제일노회에서 제출한 이광일 목사 이명 건과 경기서노회에서 제출한 온양삼일교회(최동훈) 이적(이명)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 ⑤ 유지재단에서 요청한 이사 추천 건은 총회장에게 맡겨 추천하기로 가결하다.
- ⑥ 헌법자구수정위원회에서 요청한 위원교체 및 위원회 명칭 수정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 ⑦ 남서울노회에서 재질의한 건은 17차 임원회에서 답변한바와 같이 통상적으로 도달주의로 보고 있지만 노회가 상황에 맡겨 지도하도록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 ⑧ 재판국에서 반려한 제척사유에 해당된 자의 재판국 서기 선출과 직무수행의 불합리함에 대한 진정 건과 임시노회 소집 안건으로 재판 사건의 안전 산정, 심판하는 것이 옳은지 질의 건은 사건이 종료된 사안이기에 다루지 않기로 가결하다.
- ⑨ 총회신학원에서 요청한 총회신학(연수)원 관련 운영위원회 행정 및 재정처리 건은 총회 계좌로



들어온 등록금을 해 기관으로 이체토록하고, 재학생들에 대한 행정 처리는 금번 회기까지는 처리되 차기 총회에서 폐지 청원하여 학생들은 지방 각 신학대학원으로 보내어 교육하도록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 ⑩ 김낙주 목사가 제출한 해린교회 별명부(행정정지) 해제 청원 건은 추가로 제출된 김낙주 목사가 제출한 호소문과 중앙노회에서 해린교회 관련 사실 요청에 대한 답변을 확인하니 a.제103회기 해린교회 관련 증명서 발부내역 b.해린교회 등기부등본 내용확인을 차기회의까지 확인하여 다루기로 가결하다.
- ⑪ 동성에 반대를 위한 위원회(동대위) 구성을 차기 총회에 청원하기로 가결하다.
- ⑫ 다음세대 운동본부가 청원한 추가 지원금 청원과 전국남전도회연합회 추가 지원금 청원과 교정선교위원회에서 청원한 사업비 추경 건은 기관 추가 지원과 위원회 추경은 허락하지 않기로 가결하다.
- ⑬ 총회임원회 수련회는 8월 5일부터 8일까지 진행하기로 하고 부서기, 총무에게 맡겨 진행하기로 가결하다.

2) 영덕교회자산교회수습소위원회

(1) 제1차 회의

☞ 일 시: 2023. 11. 1.(수) 12:00

☞ 장 소: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임원을 조직하다.
위원장: 전승덕 목사, 서기: 임병재 목사, 총무: 김영구 장로
- ② 양측을 불러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다.
가. 11월 13일 오전 11시 노회장, 조종배 목사
나. 11월 13일 오후 13시 이상화 장로 외 2인

(2) 제2차 회의

☞ 일 시: 2023. 11. 13.(월) 11:00

☞ 장 소: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쌍방 수습안을 제출하기로 가결하다.

(3) 제3차 회의

☞ 일 시: 2024. 2. 7.(수) 11:00

☞ 장 소: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영덕교회는 소속 노회인 경안노회에서 행정 보류하므로 소속이 없는 교회가 되었다.
- ②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영덕교회의 타노회로 이적이 교회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라 판단되는 바, 영덕교회의 타노회로 이적을 총회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고, 이적 노회 관련은 위원장에게 일임하기로 하다.

(4) 제4차 회의

☞ 일 시: 2024. 2.29.(목) 09:50

☞ 장 소: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영덕교회 정상화를 위하여 10차 임원회 결의에 따라 타노회이적 교섭 내용을 위원장이 보고하니 인근 지역노회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받으려는 노회가 없었고, 무지역노회 중 산서노회가 긍정적 의사를 비추었기에 산서노회에 공문을 보내어 정식 입장을 확인기로 가결하다.

(5) 제5차 회의

☞ 일 시: 2024. 3. 6.(수) 18:00

☞ 장 소: 대구 인터볼고 호텔

☞ 결의사항

- ① 영덕교회 중직자들 회의 결과 빠른 시일 내에 교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타 교단으로의 이적을 고려하고 있음을 본 위원회에 알려 왔고, 이에 본 위원회는 영덕교회를 살리는 방안으로 지역노회로 이적을 알아본 결과 영덕교회를 원하는 노회가 없었고, 무지역노회인 산서노회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요청 공문(본부 제108-395호, 2024.3.4.)을 보낸 결과 산서노회에서 이적을 받기로 했다는 답변 공문(산서 제2024-060호, 2024.03.05.)을 확인하다.
- ② 금일(2024년 3월 6일) 이후로 영덕교회 이적에 관한 행정 소송은 받지 않기로 하다.
- ③ 교회가 안정이 되면 다시 경안노회로 환원하는 조건으로 이적을 허락하다.

3) 제주선교센터(제주선교 100주년 기념교회)건립 관련 소위원회

(1) 제1차 회의

☞ 일 시 : 2024. 7. 25(목) 14: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임원 조직
위원장 김종철 목사, 서기 김경태 목사, 회계 이민호 장로, 총무 박용규 목사
(협력위원 박영신 국장).
- ② 제주 대흘리에 제주선교센터(제주선교100주년기념교회)를 건축하기로 하다(250~300평).
- ③ 제주 신일교회 부지 매각 후, 제주선교센터(제주선교100주년기념교회) 건축을 위해 공개 입찰하기로 하다.
- ④ 재원은 제주 신일교회를 매각한 금액과 모금한 재정으로 한다.
- ⑤ 제주 신일교회 이전 문제는 위원장과 서기에게 맡겨 진행하기로 하다.
- ⑥ 2차 회의는 8월 6일(화) 오후 5시 제주에서 모이기로 하다.

(2) 제2차 회의

☞ 일 시 : 2024. 8. 5(월) 17:00

☞ 장 소 : 제주 라마다호텔

☞ 결의사항

- ① 제주 신일교회와 대흘리에 대해 검토하고, 8월 6일에 실사하기로 하다



(3) 제3차 회의

☞ 일 시 : 2024. 8. 6(화) 19:00

☞ 장 소 : 제주 라마다호텔

☞ 결의사항

- ① 제주 신일교회 부지 매각은 107회기 총회결의에 따라 매각하기로 결의하고 매각 입찰 공고를 총회유지재단 이사회에 청원하기로 하다.
- ② 입찰 방법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하기로 하다.
가. 현금으로 매각 입찰하기로 하다.
나. 제주선교센터 건축을 대물로 건축할 업체를 선정하여 입찰하기로 하다.
- ③ 매각 입찰하기 전에 컨설팅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실사한 후에 진행하기로 하다.

4) 성석교회관련소위원회

(1) 제1차 회의

☞ 일 시: 2023. 11. 10.(금) 10:30

☞ 장 소: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아래와 같이 임원을 조직하다.
위원장: 전승덕 목사, 서기: 김영구 장로, 회계: 김화중 장로
- ② 제107회기 임원회의 시 성석교회 사건이 재판 계류 중이기에 제108회 총회 재판 결과 채택 후 임원소위에서 보고하기로 한 경위를 위원장에게 듣다.
- ③ 제108회 총회 재판국 보고가 각하되고 임원 소위원회 보고를 통해서 성석교회 관련 결의가 가결 되었으므로 결의에 따라 성석교회 공동의회까지 소위원회가 참관토록 하다.
- ④ 서경노회 성석교회 참석자 노회장 이창선 목사, 임시당회장 임창일 목사, 교인대표 지인남 원로장로가 참석하여 총회 결의에 따라 공동의회를하기로 하다.
- ⑤ 함경노회 편재영 씨, 교인대표 3인이 참석하여 성석교회 문제를 더 이상 총회에서 간섭하지 않으면 성석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하다.
- ⑥ 차기 회의는 11월 29일로 정하며 성석교회 양측을 소환하여 공동의회 날짜를 정하기로 하다.

(2) 제2차 회의

☞ 일 시: 2023. 11. 29.(수) 10:30

☞ 장 소: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함경노회 편재영 씨에게 공문을 보냈는데 수취인불명으로 2번 돌아옴을 확인하다.
- ② 편재영 씨가 교회의 대출 건은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였는지 의논하다.
- ③ 서경노회 성석교회 참석자 서경노회 노회장 이창선 목사, 성석교회 임시당회장 임창일 목사, 교인대표 지인남 원로장로가 참석하여 총회결의대로 시행하며, 총회가 서류를 발급해주기를 부탁하다.
- ④ 동일 오후 1시에 함경노회 편재영 씨, 교인대표 서상을 집사가 참석하다.
- ⑤ 편재영 씨 측에서 총회 108회기 결의는 받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며, 시간을 주면 화합하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기로 하다.
- ⑥ 12월 20일 까지 화합할 수 있는 방법을 의논하기로 하다.

- ⑦ 서경노회 성석교회 세례헌금 정리의 건은 원안대로(변경하지 않기로)하며, 총회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다.
- ⑧ 차기 회의는 12월 20일로 정하기로 하다.

(3) 제3차 회의

☞ 일 시: 2023. 12. 20.(수) 11:00

☞ 장 소: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12월 20일까지 양측이 화합할 수 있는 방법을 의논하기로 하였는데 편재영 씨 측에서 이유 없이 불참하므로 위원회에서는 108회 총회 결의대로 성석교회는 서경노회로하기로 하다.
- ② 위 사항을 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다.
- ③ 서경노회 성석교회의 세례교인은 238명으로 소위원회에서 인정하기로 하다.

5) 충남노회신설노회소위원회

(1) 제1차 회의

☞ 일 시: 2023. 11. 3.(금) 11:00

☞ 장 소: 판암장로교회당

☞ 결의사항

- ① 소위원회 조직을 아래와 같이 하다.
위원장: 김영구 장로, 서기: 임병재 목사, 총무: 신종철 목사
- ② 당회 조직 실사를 위한 차기 모임은 11월 13일(월) 오후 2시 30분 총회회관에서 모이기로 하다.

(2) 제2차 회의

☞ 일 시: 2023. 11. 13.(월) 14:30

☞ 장 소: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공동의회 개최를 위한 당회록을 24개 조직교회에 요청하여 11월 30일까지 받기로 하다.
※ 이미 제출한 2교회(천안수정교회, 연동교회) 제외
- ② 차기 회의는 12월 11일(월) 오전 11시에 총회회관에서 모이기로 하다.

(3) 제3차 회의

☞ 일 시: 2023. 12. 11.(월) 11:00

☞ 장 소: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차기 회의는 12월 18일(월) 오후 5시 새로남교회에서 모이기로 하다.
- ② 가칭) 충남제일노회 신설준비위원과 함께 모이기로 하다.

(4) 제4차 회의

☞ 일 시: 2023. 12. 18.(월) 14:30

☞ 장 소: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신설노회 대표 윤해근 목사의 의견을 청취하다.
- ② 노회신설을 위한 당회와 공동의회를 하도록 권유하다.
- ③ 차기 회의는 2024년 1월 15일(월) 오전 11시에 총회회관에서 모이기로 하다.

(5) 제5차 회의

☞ 일 시: 2024. 1. 15.(월) 11:00

☞ 장 소: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노회 신설을 위한 당회와 공동의회 서류를 검토하다.
- ② 21당회 조직이 안 되니 제109회 총회 전까지 21당회를 조직하는 조건부 신설노회 설립 승인을 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다.
- ③ 승인을 임원회에서 허락하면 과거 충남노회 소속된 나머지 교회에 가입 여부를 공문으로 보내는 것을 임원회에 청원하기로 하다.

(6) 제6차 회의

☞ 일 시: 2024. 4. 22.(월) 10:00

☞ 장 소: 비대면회의

☞ 결의사항

- ① 위원장 김영구 장로가 충남노회신설노회소위원회의 비대면회의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다.
- ② 충남노회 신설을 위한 준비모임을 총회회관에서 5월 7일(화) 11시 30분에 총회회관에서 하기로 하다.
- ③ 전산에 등록된 충남노회 교회들에게 공문을 보내어 충남노회 신설을 위한 준비모임에 참석하도록 안내하기로 하다.

6) 자산교회수습소위원회

(1) 제1차 회의

☞ 일 시: 2024. 5. 8.(수) 10:30

☞ 장 소: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소위원회 조직의 건은 아래와 같이 하기로 하다.
위원장: 부회계 이민호 장로, 서기: 김종운 목사, 총무: 회록서기 전승덕 목사
- ② 차기 회의는 자산교회 양측 대표 1인(안연준 장로, 임동천 장로)과 2024년 6월 7일(금) 오후 2시, 반야월교회에서 갖기로 하고 회의장소 협조 요청을 하기로 하다.

2) 제2차 회의

☞ 일 시: 2024. 6. 7.(금) 14:00

☞ 장 소: 반야월교회당

☞ 결의사항

- ① A측 대표 문경래 장로와 B측 대표 임동천 장로를 통해 양 측의 의견을 취합하여 별첨과 같이 합의(안)를 작성하고 서명하다.

[별첨]

합 의 서

A측 대표 문경래 장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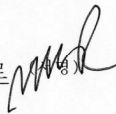
B측 대표 임동천 장로

지산교회 A측과 B측은 지산교회 노회 소속 결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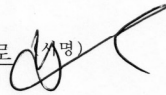
- 아 래 -

1. 제108회기 총회광주지산교회수습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 참관 하에 지산교회 후임목사 청빙과, 소속 노회 결정을 위한 공동의회를 실시한다.
2. 지산교회 임시당회장은 전남노회 소속 목사 중으로 파송하되, 지산교회 B측이 추천한 자로 소위원회가 선정한다. 임시당회장의 권한은 공동의회 사회 및 진행에 국한되며, 투표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절대 할 수 없다.
3. 청빙위원회 구성은 양 측이 합의하여 8인(청빙위원장(임시당회장) 1명, 장로 2명, 안수집사 2명, 권사 2명, 서리집사 1명)으로 구성하되, 합의되지 못할 때 소위원회가 양 측이 추천한 자 안에서 구성한다. 단, 청빙위원장(임시당회장)은 사회권은 있되 결의권은 없다.
4. 후임목사 청빙의 건은 파송된 임시당회장(전남노회 측)으로 진행한다.
5. 임시당회장으로 하여금 후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실시한다.
6. 후임목사가 결정이 되었을 경우, 그 다음 주일에 노회 선택을 위한 공동의회를 실시한다.
7. 노회 결정을 위한 공동의회를 임시당회장이 진행하되 과반 수의 득표로 노회를 결정한다.
8. 배호진 목사의 재청빙은 불가하다.
9. 원로목사(안기영 목사) 가족의 청빙은 불가하다.
10. 소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승복할 것을 합의한다.

A측 대표 문경래 장로



B측 대표 임동천 장로 (서명)



주후 2024년 6월 7일

지산교회수습소위원회

이민호 장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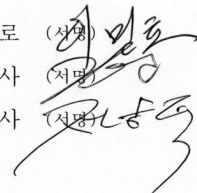
(서명)

김중운 목사

(서명)

전승덕 목사

(서명)





청 원 서

수신: 총회장
참조: 서기 및 재정부장
제목: 청원의 건

아래와 같이 청원서를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가칭) 총회 동성애대응위원회 상설위원회로 조직 청원

동성애 반대 및 대응을 위한 상설위원회가 조직되어 대응해야 합니다. 성소수자들의 축제라는 이름으로 매년 서울과 대구에서 동성애 축제를 개최하여 국민과 전국교회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대전에서까지 개최하며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형국입니다. 그들은 평등법(차별금지법)을 주장하며 인권을 주장하지만 그 이면에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자들을 억압하는 역차별적인 법제정을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인권조례에 동성애 관련 조항을 넣고, 어린이날 행사로 쿠키 도서, 웹툰 등을 무료 배포하면서 다음세대들의 호기심을 넘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만드는 형국입니다. 우리 총회는 총회 산하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조국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건강한 가정을 지켜갈 수 있도록 앞장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 총회총무 관사 제공 청원

총회총무 제도가 환원됨에 따라 총무 관사를 제공하기로 한바, 임대보증금을 총회적립기금(발전기금)에서 차용하도록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 과

- 제104회 총회 : 총무, 사무총장 제도 시행 결의
총회임원회_ 유지재단으로 하여금 총무 관사 매각토록 결의
- 제105회 총회 : 총무, 사무총장 선출
총회유지재단이사회_ 총무 관사 매각
- 제107회 총회 : 총무제도 환원하기로 결의
- 제108회 총회 : 총무 선출
총회임원회 · 재정부 · 유지재단이사회_ 사택 제공하기로 결의

2) 총무관사

- 가. 제공형태 : 전세 임대
- 나. 자금조달 : 총회발전기금에서 차용
- 다. 관 리 : 총회유지재단

3. 국제개혁대학교 인준신학교 재결의 청원

국제개혁대학교는 제99회 총회에서 인준 가결되었지만 결의문에 누락되어 재결의를 해주시기 바

랍니다.

4. 사곶교회, 진촌교회 총회 역사 사적지 지정 청원

제104회 총회에서 백령도를 한국기독교 섬으로 지정하며 누락된 사곶교회, 진촌교회를 역사 사적지 지정을 청원하오니 허락해주시기 바랍니다.

5. 총회신학원 폐지 청원

현재 대전에서 운영되는 총회 신학원은 총회 결의가 없는바 폐지하고, 지방신학교 졸업자들이 지방신학대학교(칼빈, 대신, 광신)를 통해 동등과정 교육 후 총회에 보고 시 총회인준 지방신대원 M.Div. 졸업(예정)자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회 신학원 재학생은 지방신학대학교로 편입하여 과정을 이수토록 한다.

6. 총회 본부 업무규정 개정 청원(별첨 참조)

사무총장 폐지에 따른 업무규정 개정과 총회 본부를 더욱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직원 직제개편 관련 업무규정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총회 영상 기록을 위한 예산 청원

총회 주요 행사에서 영상기록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이에 기관지인 기독교신문에서 영상업무를 담당하고 있기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8.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참여 청원

교단 산하 전국교회가 2024년 10월 27일(주일),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기도회에 적극 참여하도록 허락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총 회 임 원 회

총회장 오 정 호

서 기 김 한 욱



별첨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업무규정

현행	개정안
제 2 장 임 용 제4조(직급 및 인원)	
2. 임기직 : 사무총장 1인	(삭제)
3. 일반직	3. 일반직
1) 국장 : 각 국 1인(3명/자격자가 없을 시 부장, 차장이 대행할 수 있다)	1) 팀장 : 각 팀 1인 ① 팀장은 부팀장 중에서 임명한다. ② 임기는 2년으로 한다(1년 연장 할 수 있다).
2) 부장 : 각 국 약간 명(자격자가 없을 시 차장이 대행할 수 있다. 단, 전문직은 예외로 한다.)	2) 부팀장 : 각 팀 약간 명
3) 차장 : 각 국 약간 명(자격자가 없을 시 과장이 대행할 수 있다. 단, 전문직은 예외로 한다.)	3) 파트장 : 각 팀 약간 명
4) 과장 : 각 국 약간 명	4) 책임간사 : 각 팀 약간 명
5) 대리 : 각 국 약간 명	5) 선임간사 : 각 팀 약간 명
6) 주임 : 각 국 약간 명	6) 간사 : 각 팀 약간 명(수정)
7) 직원 : 각 국 약간 명	
제5조(임용) 직원의 임용은 다음과 같다.	
2. 사무총장 : 총회임원회에서 공개 채용으로 하고, 서기단과 회계단이 심의하여 배수추천하면 총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에 보고하며, 임기는 3년이다.	(삭제)
4. 연구직 : 부서장과 사무총장이 추천하여 총무에게 보고하고 총회장이 임명한다.	4. 연구직 : 부서장과 사무총장 이 추천하여 총무에게 보고하고 총회장이 임명한다.(수정)
5. 임시직 : 필요 시 부서장이 사무총장의 허락으로 채용하되, 총무에게 보고하고 예산 내에서 채용할 수 있다.	5. 임시직 : 필요 시 부서장이 사무총장 의 허락으로 채용하되, 총무에게 보고하고 예산 내에서 채용할 수 있다.(수정)
제6조(임용자격) 직원의 임용을 위한 자격심사 기준은 아래와 같은 자격을 구비한 자로 한다.	제6조(임용자격) 직원의 임용을 위한 자격심사 기준은 아래와 같은 자격을 구비한 자로 한다.
1. 정무직, 임기직	1. 정무직(수정)
2) 사무총장은 사무행정 전문가 혹은 그에 준하는 자로 한다.	(삭제)
① 본 교단 목사, 장로	
② 교회 및 기관에서 10년 이상 사무한 자	
③ 50세 이상	
제10조(승진) 1. 직원의 승진은 근무성적 평점과 경력 평점 및 기타 능력 등을 참작하여 직급별 정원의 범위 안에서 부서장의 추천으로 사무총장이 인선하여 총무에게 보고하고 총회임원회의 결의 후 총회장이 임명한다.	제10조(승진) 1. 직원의 승진은 근무성적 평점과 경력 평점 및 기타 능력 등을 참작하여 직급별 정원의 범위 안에서 부서장의 추천으로 총무가 인선하여 총회임원회의 결의 후 총회장이 임명한다.(수정)
제13조(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제13조(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p>경우에는 사무총장은 총무에게 보고하고 휴직을 명할 수 있다.</p>	<p>경우에는 총무가 휴직을 명할 수 있다.(수정)</p>
<p>3. 제2항의 경우에도 복직하지 아니할 경우 14일 이내에 사무총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총무와 총회장에게 보고한다.</p>	<p>3. 제2항의 경우에도 복직하지 아니할 경우 14일 이내에 총무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총회장에게 보고한다. (수정)</p>
<p>제20조(정년) 직원의 직급별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총무 : 총회 규칙에 준한다. 2. 사무총장 : 총회규칙에 준한다. 3. 국장 : 만 61세에 도달하는 날(단, 근로기준법 개정 시 근로기준법 적용) 4. 부장 이하 : 근로기준법 적용</p>	<p>제20조(정년) 직원의 직급별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총무 : 총회 규칙에 준한다. 2. 사무총장 : 총회규칙에 준한다.(삭제) 2. 팀장 : 만 61세에 도달하는 날(팀장을 역임한자도 포함)(수정) 3. 부팀장 이하 : 근로기준법 적용(수정)</p>
<p>제22조 (퇴직)</p>	<p>제22조 (퇴직) 4. 팀장을 제외한 직원이 정년에 도달되어 퇴직 할 시 25년 이상근무자는 명예보존을 상향하여 직함을 상향하고 행정 처리한다.(신설)</p>
<p>제 4 장 편제 및 사무분장 제26조 (기구 및 임무)</p>	
<p>2. 각 직급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총무는 비상근직으로서 총회장의 지시하에 총회와 관계되는 내외의 사무를 헌법과 규칙 범위 안에서 시행하되 총회를 대표할 수 없으며, 총회와 임원회의 언권 회원이 되어 회의 기간 내에 사무 진행된 경과 상황을 보고한다(총회규칙 제3장 제12조 1항).</p>	<p>2. 각 직급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총무는 상근직으로서 총회장의 지시하에 총회와 관계되는 내외의 사무를 헌법과 규칙 범위 안에서 시행하되 총회를 대표할 수 없으며, 총회와 임원회의 언권 회원이 되어 회의 기간 내에 사무 진행된 경과 상황을 보고한다(총회규칙 제3장 제12조 1항).</p>
<p>3) 총회 상비부(위원회)의 대외사업과 총회와 총회산하기관, 노회, 연합기관과의 연합관계를 총찰(總察)하여 총회장을 보좌하고, 본부 내 사무행정업무는 사무총장에게 맡겨 보고케 한다.</p>	<p>3) 총회 상비부(위원회)의 대외사업과 총회와 총회산하기관, 노회, 연합기관과의 연합관계를 총찰(總察)하여 총회장을 보좌하고, 본부 내 사무행정업무는 사무총장에게 맡겨 보고케 한다. 총회산하 각급 기관과 사업 및 업무를 조정기획 할 수 있다. (수정)</p>
<p>나. 사무총장은 상근직원으로서 총무 지시 하에 총회와 관련되는 사무를 관장한다(총회규칙 제3장 제12조 2항). 1) 기획행정실을 직할하고, 각 국의 업무를 통솔, 조정하며 총무에게 보고한다. 2) 총회임원회, 총회 정기위원회 및 담당 상비부(위원회)와 담당부서에 배정되지 아니한 기타 위원회(기관)의 실무를 담당한다. 3) 총무의 대외 업무에 필요한 사무를 담당한다.</p>	<p>(삭제)</p>
<p>다. 각 국장 : 사무총장 지시 하에 담당 부서의 상비부장(위원장)을 보좌하며 결의된 사항을 절차에 따라 집행한다.</p>	<p>다. 각 팀장 : 총무 지시 하에 담당 부서의 상비부장(위원장)을 보좌하며 결의된 사항을 절차에 따라 집행한다. (수정)</p>
	<p>1) 기획행정팀장 : 직원 인사/복무, 재정 및 본부 행정을 관장한다.(신설)</p>



1) 교육전도국장 : 교육, 신학, 전도, 사회 정책과 관련된 부서와 유관 특별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한다.	2) 교육전도팀장 : 교육, 신학, 전도, 사회 정책과 관련된 부서와 유관 특별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한다. (수정)
2) 출판국장 : 출판사업, 순교자기념사업, 유관 특별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한다.	3) 출판팀장 : 출판사업, 순교자기념사업, 유관 특별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한다. (수정)
3) 법인국장 : 유지재단, 은급재단, 사회복지재단, 유관 특별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한다.	4) 법인팀장 : 유지재단, 은급재단, 사회복지재단, 유관 특별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한다. (수정)
라.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주임, 직원은 사무총장, 각 국장의 지시에 따라 맡겨진 업무를 수행한다.	라. 부팀장, 파트장, 직원은 총무, 각 팀장의 지시에 따라 맡겨진 업무를 수행한다. (수정)
제27조 (직무분장) 총회본부 편제에 의한 직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1. 기획행정실	1. 기획행정팀 (수정)
가. 기획팀	가. 기획파트 (수정)
나. 사무행정팀	나. 사무행정파트 (수정)
2. 교육전도국	2. 교육전도팀 (수정)
가. 교육팀	가. 교육파트 (수정)
나. 전도팀	나. 전도파트 (수정)
3. 출판국	3. 출판팀 (수정)
4. 법인국	4. 법인팀 (수정)
5. 인사위원회	5. 인사위원회
1) 조직 : 총회본부의 업무 발전을 위한 조정 관리, 기획 통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국장을 위원으로 하며 기획행정실 인사담당자를 간사로 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시에 부장 중 위원을 선임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1) 조직 : 총회본부의 업무 발전을 위한 조정 관리, 기획 통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총무 를 위원장으로 하고 팀장 및 각팀 부팀장(약간명) 을 위원으로 하며 기획행정팀 인사담당자를 간사로 한다. (수정)
7. 각국의 운영을 위하여 부장, 차장급을 팀장으로 하는 팀조직을 운영할 수 있으며, 팀장은 부서장의 추천으로 사무총장이 총무에게 보고하고 총회장이 임명한다.	(삭제)
제28조 (부책관리) 각 국에서는 편제에 의한 업무 및 사무처리에 관한 부책 및 대장 등을 비치한다.	제28조 (부책관리) 각 팀 에서는 편제에 의한 업무 및 사무처리에 관한 부책 및 대장 등을 비치한다. (수정)
제29조 (업무협조) 각 국에서는 당해국의 소관 업무 이외에도 상호 긴밀한 연락 하에 협조하여 총회업무를 처리한다.	제29조 (업무협조) 각 팀 에서는 소관 업무 이외에도 상호 긴밀한 연락 하에 협조하여 총회업무를 처리한다. (수정)
제 6 장 근 무 제36조 (근무시간)	
2. 근무시간 : 시업 및 종업시각은 9:00~18:00을 원칙으로 하되, 근무형태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단, 사무총장이 총무에게 보고하고 총회임원회 승인을 득한 후 출퇴근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2. 근무시간 : 시업 및 종업시각은 9:00~18:00을 원칙으로 하되, 근무형태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단, 총무 가 총회임원회 승인을 득한 후 출퇴근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수정)

제37조 (이석금지) 모든 직원은 근무시간 중 사무총장의 승인없이 무단 이석하지 못한다.	제37조 (이석금지) 모든 직원은 근무시간 중 총무 의 승인없이 무단 이석하지 못한다.(수정)
제38조 (시간외 근무) 직원은 총회헌법에 따라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외에도 사무총장의 명을 받아 시간외 근무를 한다.	제38조 (시간외 근무) 직원은 총회헌법에 따라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외에도 총무 의 명을 받아 시간외 근무를 한다.(수정)
제39조 (결근) 2. 전 항의 결근계는 소속장을 경유하여 기획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각 국장 결근계는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무총장의 결근계는 총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 (결근) 2. 전 항의 결근계는 소속장을 경유하여 기획행정 팀 에 제출하여야 하며, 각 팀장 결근계는 총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
제45조(일지) 전 직원은 매일 업무일지를 기록하여 퇴근 전 부서장에게 결재를 득하며 부서장은 사무총장의 결재를 득한다.	제45조(일지) 전 직원은 매일 업무일지를 기록하여 퇴근 전 팀장 에게 결재를 득하며 팀장은 총무 의 결재를 득한다.(수정)
제 7 장 출 장 제46조(출장) 사무총장의 국내출장은 총무, 해외출장은 총무와 총회장의 허락을 받고, 직원의 출장은 부서장이 보고하여 사무총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 7 장 출 장 제46조(출장) 직원의 출장은 팀장이 보고하여 총무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수정)
제47조(출장보고) 출장 임무를 마친 후 3일 이내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총장은 총무에게, 직원은 부서장이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출장보고) 출장 임무를 마친 후 3일 이내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직원은 팀장이 총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수정)
제61조(징계) 1. 인사위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과실을 범하였을 때 총무에게 보고 후 상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후 총회장이 징계한다. 2. 사무총장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과실을 범하였을 때에는 총무가 상별위원회에 회부하여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총회장이 징계처분 할 수 있다.	제61조(징계) 1. 다음 ①항은 직원이 소속된 팀장이 처분할 수 있고, 그 외 항에 해당하는 과실을 범하였을 때 인사위원장은 해당 직원을 상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후 총회장이 징계한다.(수정) (삭제)
① 경고 : 총회 헌법 및 규칙, 총회결의, 본부업무규정에 경미한 위반이 있는 자	① 주의 : 총회 헌법 및 규칙, 총회결의, 본부업무규정에 경미한 위반이 있는 자(신설) ② 경고 : 가. 주의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동일한 위반을 반복한 자(수정) 나. 총회 헌법 및 규칙, 총회결의, 본부업무규정에 위반이 있는 자(수정)
제62조(근무불량) 무단지각, 결근, 부적절한 언행, 근무지 이탈, 항명 등 근무성적이 불량한 직원은 사무총장이 총무에게 보고 후 총회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총회장이 조치한다.	제62조(근무불량) 무단지각, 결근, 부적절한 언행, 근무지 이탈, 항명 등 근무성적이 불량한 직원은 사무총장이 총무에게 보고 후 총회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총회장이 조치한다.(수정)
제64조(결재) 총회 일반행정 문건은 사무총장이 총무에게 보고하며 총무의 전결로 하고 특별한 사항(한법 및 규칙 외)은 총무가 보고하여 총회장의 결재를 얻어 집행한다.	제64조(결재) 총회 일반행정 문건은 총무 의 전결로 하고 특별한 사항(한법 및 규칙 외)은 총무가 보고하여 총회장의 결재를 얻어 집행한다.(수정)
제 10 장 처 무	제 10 장 처 무



<p>제65조(직무대행)</p> <p>1) 총무 유고 시 사무총장이 대행한다.</p> <p>2) 사무총장 유고 시 조직편제(교육전도국장, 출판국장, 법인국장) 서열대로 대행한다.</p>	<p>제65조(직무대행)</p> <p>1) 총무 유고 시 기획행정팀장이 대행한다.(수정)</p> <p>2) 기획행정팀장 유고 시 조직편제(교육전도팀장, 출판팀장, 법인팀장) 서열대로 대행한다.(수정)</p>
<p>제66조(문서취급) 모든 문서는 기획행정실 서무담당자가 취급한다.(단, 각 법인은 별도로 취급한다)</p>	<p>제66조(문서취급) 모든 문서는 기획행정팀 서무담당자가 취급한다.(단, 각 법인은 별도로 취급한다)(수정)</p>
<p>제72조(특별임무) 사무총장은 총회 모든 직원에게 직접 특별임무를 맡길 수 있으며 임무를 맡은 직원은 이를 수행하고 결과를 사무총장에게 보고한다.</p>	<p>제72조(특별임무) 총무는 총회 모든 직원에게 직접 특별임무를 맡길 수 있으며 임무를 맡은 직원은 이를 수행하고 결과를 총무에게 보고한다.(수정)</p>
<p>제73조(예산집행) 1. 총회의 모든 재정은 예산범위 안에서 회계 책임하에 사무총장이 맡아 집행하고 총무에게 보고한다.</p>	<p>제73조(예산집행) 1. 총회의 모든 재정은 예산범위 안에서 회계 책임하에 총무가 맡아 집행한다.(수정)</p>
<p>제 11 장 급여 및 퇴직금</p> <p>제79조(보수규정) 직원의 급여를 위한 보수규정은 별도 규정에서 정하고 이에 따라 각 회계단위(총회, 유지재단, 은급재단, 사회복지재단)마다 통일적으로 적용한다. 총무는 총회서기에 준하는 활동비로, 사무총장은 연봉제로 지급한다.</p>	<p>제 11 장 급여 및 퇴직금</p> <p>제79조(보수규정) 직원의 급여를 위한 보수규정은 별도 규정에서 정하고 이에 따라 각 회계단위(총회, 유지재단, 은급재단, 사회복지재단)마다 통일적으로 적용한다. 총무는 연봉제로 지급한다.(수정)</p>
<p>제 12 장 부 칙</p> <p>제2조 본 규정의 미비한 것은 총회임원회의 결의로 유권 해석하며 통상 관례에 따른다.</p>	<p>제 12 장 부 칙</p> <p>제2조 본 규정의 미비한 것은 총회임원회의 결의로 유권 해석하며 시행세칙과 통상 관례에 따른다.(수정)</p>